

감 사 보 고 서

- 행동강령 이행실태(외부강의등) 점검 -

2025.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I. 감사추진계획

1. 감사 배경 및 목적

- 외부강의등을 목적으로 외부 기관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집단과 부당하게 유착되는 등의 부패를 차단하고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수수하는 부조리 방지
- 외부강의등 활동으로 인한 복무 등 공직기강 강화
 - ※ 2025년 감사실 업무계획 ‘2025-11(복무감사)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상반기)’ 일환
- 근거 법률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
 - 『사무처직원 외부강의등 운영지침』 및 매뉴얼

2. 중점 점검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준수 여부 점검
 - 신고의무 준수 여부, 초과 사례금 수령 여부
 - 월 3회 초과 여부, 휴가 및 휴일 사용 여부
 - 예비 중복 지급 여부, 결제 및 보고 누락 여부 등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 1인(♡♡♡ 과장)
- 감사기간
 - 예비조사 : 2025. 4. 1.(화) ~ 4. 4.(금)
 - 예술위 ERP시스템 신고서 등 분석

- 주요 외부기관에 우리 기관 임직원의 외부활동 현황자료 제출 협조 요청
- 실지감사 : 2025. 4. 7.(월) ~ 4. 25.(금) (※ 소명기간 포함)
- 감사결과 보고 : 2025. 4. 29.(화)

4.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감사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임직원
 - 감사대상 기간 신고건수 및 신고인수 : 593건 / 110명
- ※ 퇴직자 제외

5. 감사결과 처리

- 실지감사 종료 후 □□□ 실장, ♥♥♥ 과장은 2025. 4. 28.(월) 감사
마감 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지적 사항 및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였으며, 2025. 4. 29.(화) ○○○ 상임감사, □□□ 실장은 처분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함

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평

- 본 감사는 ‘24년 점검 이후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함
-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위원회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에 신고된 내역 593건과 주요 외부기관 21곳에서 우리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현황 자료 100건을 제출받아 점검함
-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은 사례금 상한액과 월 수행 횟수를 준수하는 등 지난해 대비 규정 숙지가 우수한 편이었으며 전문지식 활용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음
- 다만,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누락과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여비를 수령하는 사례는 여전히 확인되었으며 근무 또는 출장 중 휴가 사용 없이 외부강의등 활동을 하거나 공문을 첨부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됨
- 해당 사실을 지적하여 주위를 환기시키고 외부강의등 운영 규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번 조치로 인해 위원회 임직원의 외부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위원회 홍보,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임직원의 외부 활동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장려되어야 함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합계			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5	6	122,000	-	-	2 (122,000)	-	-	2 (122,000)	1 (1)	2 (5)	-	-	-	-	-

3. 지적사항 요약

1)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 총 5인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총 12건의 신고를 누락하였음

※ 주요 외부기관에 위원회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자료 제출 협조를 받아 검토

○ 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2항,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1항

-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요청 내용 및 사례금 총액 등을 위원장에게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2) 외부강의등 관련 출장비 수령 위반

○ 총 1인은 1건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사유의 출장 시, 출장비 122,000원을 수령하였음

○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6항

- 출장으로 처리하는 외부강의등은 사례금을 받을 경우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3) 신고 미흡 등

○ 외부강의등 신고 시 요청기관의 공문 미첨부(3인, 3건)

○ 외부강의등 활동 시 휴가 미사용(4인, 4건)

○ 외부강의등 신고 시 사례금 미기재(1인, 1건)

○ 외부강의등 신고 시 미승인(1인, 1건)

○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7항

- 신고 시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전화나 전자 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등은 금지함

○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5항

-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휴가·휴일을 활용하여야 함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제목 (지적사항)	처분종류	요구사항	인원	조치부서 (관련부서)
1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경고	○ 지난해 동일한 건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6건의 신고를 누락한 자에 대해 '경고' 처분	1인	*****
		주의	○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의' 처분	4인	
2	외부강의등 관련 출장비 수령 위반	주의	○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여비를 수령한 자에 대해 '주의' 처분	1인	*****
		시정(회수)	○ 지급된 여비 총 122,000원에 대하여 '시정(회수)' 처분		*****
3	신고 미흡 보완	시정	○ 신고 미흡 등에 대한 신고 보완 요구	9인	*****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경고	△△△	△△	△△	△△△
	주의	●●●	●●	●●	●●●
	주의	▣▣▣▣▣	▣▣▣	▣▣▣	▣▣▣▣▣
	주의	@@@	@@	@@	@@@
	주의	###	##	##	###
외부강의등 관련 출장비 수령 위반	주의	◆◆◆	◆◆	◆◆	◆◆◆

[첨부]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증거서류 목록(별도 첨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경고 · 주의

제 목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조 치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외부강의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회 「행동강령」 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에 따라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항, 위원회 「행동강령」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신고 및 승인)1항에 의하면 사례금 수령 여부나 요청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불문하고 모든 외부활동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외부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1조(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제한)에 따르면, 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며 위원회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외부강의등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표 1]과 같이 총 5인은 **** 등 3개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아 참석하여 사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ERP(통합행정정보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외부강의등 신고누락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대가총액 (원)
1	●●●●	●●●●	2024-03-07, 03-08	심사			300,000
2	▣▣▣▣	▣▣▣▣	2024-03-12	자문			551,600
3	▣▣▣▣	▣▣▣▣	2024-03-13	자문			600,000
4	▣▣▣▣	▣▣▣▣	2024-03-21	자문			200,000
5	△△△	△△△	2024-04-22	자문			465,300
6	△△△	△△△	2024-04-23	자문			300,000
7	△△△	△△△	2024-07-17, 07-18	자문			390,600
8	△△△	△△△	2024-08-23	자문			304,600
9	△△△	△△△	2024-09-20	자문			300,000
10	△△△	△△△	2024-09-26	자문			300,000
11	@@@	@@@	2024-05-23	자문			300,000
12	###	###	2024-05-21	심사			200,000

※ 상기 사실은 외부기관에 요청한 '위원회 임직원 대상 2024년 외부강의등 참여 현황' 회신 문서를 통해 확인

관련자들이 신고한 다른 외부강의등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한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재발 여지가 있고 환기 차원의 지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6건의 내역을 누락한 △△△의 경우는 지난해 행동강령 이행실태(외부강의등) 점검 시, 신고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4. 관련자 의견

신고를 누락한 5인을 대상으로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며 불찰에 의한 누락이라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의 경우, [표 1] 연번 5번~6번(***** 교육지원사업 선정단체 전문가 컨설팅)에 대해 요청기관으로부터 요청 공문을 받았으나, 사례금이 표기되지 않아 공문 재발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받지 못하여 이후 신고하려다 시일이 지난 건이라고 소명하였다. 또한 [표 1] 연번 7번~10번(***** 교육지원사업 중간공유회 및 전문가 컨설팅)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일정과 총 사례금 등이 부정확하다는 사유로 ‘반려’ 되었고 이후 요청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일자별 공문을 받지 못해 누락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소명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①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1인)에게 지난해 동일한 건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발된 사안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경고)

(관련자) △△△ △△ △△△

②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4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 ●● ●●●

■■■■■■ ■■■■ ■■■■■■

@@@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주의 · 시정(반납)

제 목 외부강의등 관련 출장비 수령 위반

조 치 부 서 *****, *****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회 「행동강령」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5조(외부활동의 제한)5항 및 6항에 의하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휴가 또는 휴일을 활용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 및 국가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출장으로 처리하는 외부강의등 활동은 사례금을 받을 경우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은 [표 2]과 같이 *****의 요청으로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자문 활동을 '출장'으로 수행하면서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여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외부강의등 출장비 수령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 기관명	내용	대가총액 (원)	출장여비 지급내역(원)
1	◆◆◆	◆◆◆	2024-03-13	자문			200,000	122,000 (교통비 97,000 일비 25,000)

다만, 관련자가 신고한 다른 외부강의등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출장’으로 처리하여 수행한 ‘**** 자문회의’ 참석 시에도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출장 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단순 실수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당 지적 사항은 과거 감사실 자체감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시 ‘주의’를 받은 사항임에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주요 위반 사례이므로 관련자에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4. 관련자 의견

관련자에게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지침 미숙자로 인한 여비수령으로 향후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강의등 활동을 수행하면서 대가로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여비를 수령한 관련자 1인에게 주의 처분 하시고, 지급된 출장 여비를 회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의 및 시정(회수))

(관련자)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시정

제 목 신고 미흡 보완

조 치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회 「행동강령」과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신고 및 승인)7항에 따르면 신고 시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등은 금지한다. 또한, 제5조(외부활동의 제한)5항에 의하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휴가 또는 휴일을 활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표 3]과 같이 요청기관의 요청 공문을 필수 첨부하여야 하나 첨부하지 않거나 공문 대신 계획안을 첨부한 경우가 있었으며, 휴가 또는 휴일을 활용하여 외부강의등 활동을 하여야 하 업무 시간 또는 외부 출장 수행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신고 시 사례금을 누락하거나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표 3] 외부강의등 신고 미흡 등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활동내용	확인내용
1	♣♣♣	♣♣♣	2024-05-10	평가			공문 미첨부
2	☒☒☒	☒☒☒	2024-02-06	심사			공문 미첨부
3	○○○	○○○	2024-03-27	토론			공문 미첨부
4	☆☆☆	☆☆☆	2024-08-07	평가			휴가 미사용 (근무 중 수행, 14:00~17:00, 3시간)
5	&&&	&&&	2024-01-29	심사			휴가 미사용 (근무 중 수행, 14:00~16:00, 2시간)
6	♠♠♠	♠♠♠	2024-02-27	심사			휴가 미사용 (출장 중 수행, 14:00~16:00, 2시간)
7	▷▷▷	▷▷▷	2024-03-05	자문			휴가 미사용 (출장 중 수행, 14:00~17:00, 3시간)
8	◆◆◆	◆◆◆	2024-12-27	심사			사례금 미기재
9	☆☆☆	☆☆☆	2024-08-27	심사			신고 미승인 (신청등록 상태)

4. 관련자 의견

관련자들에게 소명을 받아 본 결과,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바쁜 일정 등으로 미처 휴가를 내지 못하거나 실수로 공문을 첨부하지 않는 등 착오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외부강의등 수행 시 휴가를 활용하지 않고, 근무 또는 출장 중 외부강의등 활동을 수행한 관련자(4인)에게 휴가를 소급 적용하시기 바라며(시정),

(관련자) ☆☆☆ ☆☆ ☆☆☆

&&& && &&&

♠♠♠ ♠♠ ♠♠♠

▷▷▷ ▷▷ ▷▷▷

② 신고가 미흡한 관련자(5인)에게 보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관련자) ♣♣♣ ♣♣ ♣♣♣

☒☒☒ ☒☒ ☒☒☒

⊙⊙⊙ ⊙⊙ ⊙⊙⊙

◆◆◆ ◆◆ ◆◆◆

☆☆☆ ☆☆ ☆☆☆

※ 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조치 요망